



문서번호	토지관리과-10124
결재일자	2016.6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지방시설주사	도로명주소팀장	토지관리과장	도시관리국장	
정호산	최춘근	성중경	06/23 윤호중	
협 조				
	기획예산과장	이운영		

##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 및 집행 계획

□ 추진배경

- ◆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은 차량용 위주로 시·중점에 설치되어 이면도로, 골목길 등에 안내시설이 없어 보행자 불편

□ 추진기간 : 6월 ~ 12월

□ 설치계획 : 235개 추가 설치 예정

구 분	설치합계	2016년	기존설치	비고(단위:개)
합 계	2,253	235(272)	1,981	
보행자용 현수식	1,305	35(37)	1,233	37개 상반기 설치 수량
보행자용 벽면형	948	200	748	

- ◆ 기존 설치물량의 13.7% 인 272개 설치 예정\* 상반기 37개 설치 포함.
- ◆ 주택가 내부는 설치비용이 저렴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
- ◆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이면도로는 상가의 잦은 리모델링으로 훼손 가능성이 커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으로 설치

□ 확보(소요)예산 : 18,000천 원

- ◆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: 18,000천 원

##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

#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 및 집행계획

골목길,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에 따라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구민의 집(길) 찾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.

## I

### 추진 근거

- ❑ 『도로명 주소법』 제8조의7제1항(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)
- ❑ 『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』 제9조제1항(도로명판의 설치기준)
- ❑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지방비 등 제출
  - [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583(2016. 2. 19), 서울시 자치행정과4424호(2016. 2. 24.)]
- ❑ 20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교부액 통보
  - [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1708(2016. 5. 23), 서울시 자치행정과11348호(2016. 5. 30.)]

## II

### 추진 개요

- ❑ 추진기간: 2016. 6. ~ 12. 31.
- ❑ 추진내용
  - 신규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대상지 설정 조사
  -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병행 처리
  - 국비 50% 매칭에 따른 지방비 100% 확보

□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

2015. 12. 31.

구 분	총 계	도로명판		
		현수식	이면도로용	벽면형
수량	1,981	1,213	20	748

□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유형

현수식 도로명판 (로마자 표기)	이면도로용 도로명판 (로마자 표기)	벽면형 도로명판 (다국어 표기)
		

□ 도로명판 설치 예상 현황

(단위: 개)

구 분	설치합계	2016년	기존설치	비 고
합 계	2,253	272	1,981	
보행자용 현수식	1,305	35(37)	1,233	37개 상반기 설치 수량
보행자용 벽면형	948	200	748	

※ 1,981(현재 도로명판)+970(미래계획)/우리구 교차로 수(1,949)=1.5개

※ 2016년도 보행자용 현수식 설치물량은 상반기 37개 설치량 포함

□ 특별교부세 확보 및 예산 현황(2016년도)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총 계	예 산 현 황		
		국비(특교세)	지방비	기타
예산	27,624	18,000	9,624	지방비: 시비 3,600 구비 6,024

### III

## 교부 기준 및 조건

### □ 특교세 교부 조건 현황

- 지자체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교부
- **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액 범위 내에서 교부**
  - 지방비는 교부세의 100% 이상을 '16년 예산(추경 포함)에서 확보 (최소 1 : 1 매칭)
- **다음 경우는 감액 교부**
  - '15년 특교세를 다음연도로 이월한 시군구는 신청액의 50% 감액
  - '16.5.1 현재 '15년에 교부된 특교세를 집행완료하지 못한 시군구는 교부 제외
  - '15년도 지방비 부담액(특교세 교부액의 100%)을 전부 부담하지 못한 지자체는 미 부담액만큼 감액
- **최대 교부금액 및 최소 교부금액 설정**
  - 보다 많은 지자체에 교부하기 위하여 최대 36백만원 교부
  - 재정집행 효율성을 위해 신청액이 5백만원보다 적거나 감액결과 5백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5백만원 교부
- 기타 정부정책, 특교세 교부·집행 등 감안 조정
- **특별 교부세의 사용**
  -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에 사용 불가
  -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특교세 교부액보다 적게 확보한 지자체는 추경에서 지방비를 전액 확보

### IV

## 예산 확보

### □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총 계	예 산 현 황		
		국비(특교세)	지방비	비 고
예산	27,624	18,000	9,624 (시비 3,600 +구비 6,024)	

※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필요

#### [지침] 2016년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계획 교부 기준

- ②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액 범위 내에서 교부
  - 지방비는 교부세의 100% 이상을 '16년 예산(추경 포함)에서 확보(최소 1 : 1 매칭)

## V

### 세부 추진계획

#### □ 추진일정

- 6. 10.~6. 30.: 확충 설치 계획 방침 및 특교세 간주처리
- 7. 1.~9. 31.: 안내시설물 설치 위치 검토 및 현장 조사
- 10. 1.~12. 31.: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계획 및 설치

※ 상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병행 실시[토지관리과-1939(2016.2.2)]

#### □ 추진방향

- 전철역 출구에서 나오면 볼수 있는 **앞방향용 도로명판** 설치
- 주택가 내부는 설치비용이 저렴한 **벽면형 도로명판** 설치
- **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** 이면도로는 상가의 잦은 리모델링으로 훼손 가능성이 커 보행자용 **현수식 도로명판**으로 설치

#### □ 추진사항

-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위치 적정성 · 안전성 여부 조사
-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·망실 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
-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한 “로”급, “길”급 시설물 추가 설치
-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설치

※ 상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병행 실시[토지관리과-1939(2016.2.2)]

## VI

### 행정 사항

-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실적 월별 제출: 서울시 자치행정과
-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간주처리 요청: 기획예산과

- 붙임 1. 행자부 주소정책과 특별교부세 교부 공문 1부.  
2. 제14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자료 1부. 끝.